



〈뒷면〉

◆ 도서관 이용 관련 주요 규정 및 이용지침 ◆

[연체 및 대출중지] - 도서관 운영세칙

제7조(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)

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연체자에 대한 대출 중지 및 근로 봉사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대출 중지 기간은 “연체 책수×연체 일수”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
근로 봉사 기간은 “연체 책수×연체 일수×10분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, 1시간 이하의 근로봉사 기간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.

[분실도서변상] - 도서관 규정

제30조(자료의 변상)

①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동일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동등 가치로 평가되는 유사주제의 최신자료 1책을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절판 등으로 인하여 유사 주제의 자료가 없을 경우 변상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관장은 실물변상 또는 대물변상 시에 자료정리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[무단유출] - 도서관 규정

제32조(자료 무단반출 등에 대한 제재)

① 도서관 자료를 무단반출, 훼손, 오손하거나 시설·물품을 훼손, 파괴, 절도 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시가의 2배 변상(실수나 고의 불문) | 2. 1년간 대출 중지   |
| 3. 자술서 제출               | 4. 학과장, 가정에 통보 |
| 5. 도서관 게시판에 공고          | 6. 관련기관에 조치 의뢰 |

②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이거나 본인이 깊이 반성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시간의 도서관 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.

[회원증 타인 대여] - 도서관 이용수칙 위반자

제4조(학생증 및 계정의 대여)

도서관 출입용 학생증·신분증·출입증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,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및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 이를 1회 위반할 경우 10일간 도서관 출입금지,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간 도서관 출입을 금지한다.

[환불] - 도서관 운영세칙

제5조의 2(연회비 반환)

① 연회비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서관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
2.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대구(경산포함) 이외의 지역에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
3.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회비 환불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: 연회비의 2/3 반환
2.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: 연회비의 1/2 반환
3.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: 반환금액 없음

\* 이사로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: 주소변동 내역이 표기된 증빙서류(주민등록초본 등)를 첨부하여 연회비 환불 신청서 작성

\* 질병 및 사고로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: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회비 환불 신청서 작성

본인은 회원 가입안내에 따라 연체, 대출중지, 분실도서변상, 무단유출, 회원증 타인 대여, 환불 등 모든 사항에 있어서 경북대학교 도서관 규정 및 이용지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.

신 청 자 : \_\_\_\_\_ ( 서명 및 날인 )